

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기획조정과)

제출일 : 2026. 8.

1. 제안이유

-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구성 추진
- 2026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정원 증원

2. 주요내용

가. 기구 조정

- 1) 본청 담당관과 조정 : (현행) 2담당관 30과 ⇒ (조정) 2담당관 31과 (증 1과)
 - 분 과: 노인장애인복지과 → 노인복지과, 장애인복지과
 - 명칭변경: 민원여권과 → 원스톱민원과
여성아동과 → 성평등가족과

나. 정원조정: (현행) 총 정원 1,103명 ⇒ (조정) 1,132명 (증 29명)

- 집행기관: (현행) 1,077명 → (조정) 1,105명 (증 28명)
- 의회사무기구: (현행) 26명 → (조정) 27명 (증 1명)

다. 사무조정

- 1) 신설
 - 지역 내 자살예방 총괄 기획에 관한 업무(성평등가족과)
- 2) 이체
 -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 : 복지정책과 → 노인복지과
 - 초등돌봄에 관한 업무 : 평생교육과 → 보육정책과
 - 영유아·아동 돌봄에 관한 업무 : 여성아동과 → 보육정책과
 -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 : 노인장애인복지과 → 장애인복지과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유정수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따른 기준인력 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복지 분야의 조직을 개편하고 총 정원을 2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, 관계 법령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기능을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, 돌봄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○ 검토 결과,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